9. 서울특별시종로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3 . 9 . 19
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
재 무 건 설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9월 4일 · 종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9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
제1차(2003. 9. 19)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강 형 우)

가. 개정이유

○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,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에만 공사 종료 후에 행하던 것을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하고, 납부기한을 일정하게 정함 (안 제3조제4항, 제5항)

○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 신설(안 제3조의2)

○ 보도의 블록 · 타일류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간접손궤 영향폭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.6m에서 0.4m로 현실에 맞게 축소 조정함(안 별표 1)

○ 직접복구 표준단면 중 일반보도블럭과 소형고압블록의 모래 포설 두께를 표준품셈과 일치하도록 3㎝에서 4㎝로 변경함(안 별표 2)

○ 차도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간접복구비를 면제토록 함(안 별표 2)

○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(안 별표 1, 2)

· 사리도 → 비포장도로

다. 개정근거

○ 관계법령 : 도로법(제3조, 제78조), 도로법시행령(제1조의3), 지방세법(제27조,제28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: 검토보고서 참조

(보고자 : 전문위원 정 성 수)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없 음

5. 討 論 要 旨 : 없 음

6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7. 少數 意見의 要旨 : 없 음

8. 其他 必要한 事項 : 없 음